

# 유료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계획

◆ 유료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위탁기관 재선정을 위한 계획입니다.

## □ 위탁운영 근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주차장법」 제8조 및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 □ 위탁개요

- 위탁기간 : '23. 11. 23. ~ '26. 11. 22. / 3년간
- 선정방법 : 공개입찰
- 위탁대상

구 분	위 치	주차면수	운영시간	비 고 (계약금액)
노상주차장	북부사거리 ~ 중앙교 북단	39면	연중무휴 · 4월 ~ 10월 : 08:00 ~ 20:00 · 11월 ~ 3월 : 09:00 ~ 19:30	3,458천원
거창읍 거점 공영주차장	거창읍 대동리 780-3 일원	50면	연중무휴 · 09:00 ~ 18:00	17,880천원

- 위 탁 료 :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 산정

## □ 운영사항

### ① 북부사거리 ~ 중앙교 북단 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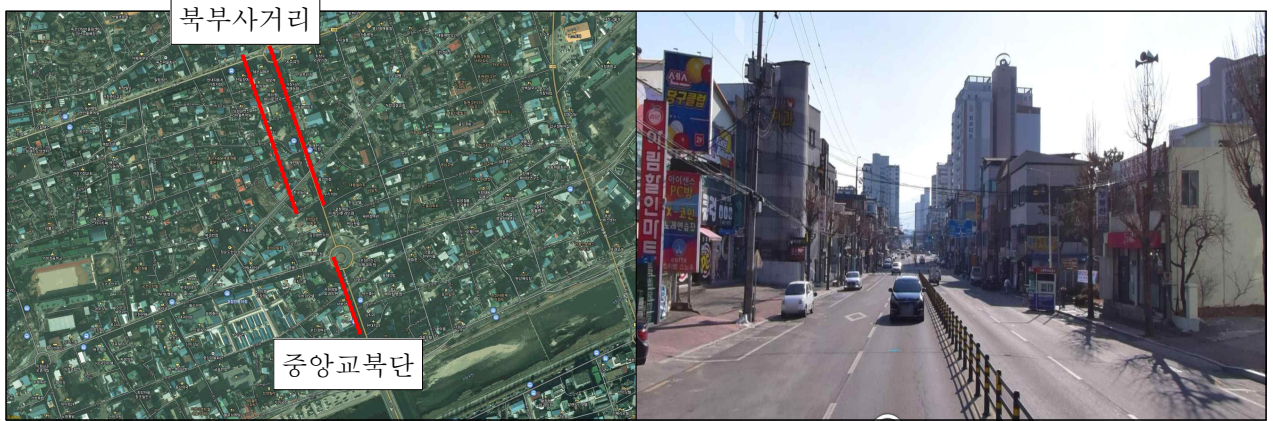
- 위탁기간 : '20. 11. 23. ~ '23. 11. 22. (3년간)
- 수탁기관 : 경남거창지역자활센터
- 운영시간(연중무휴)
  - 4월 ~ 10월 : 08:00 ~ 20:00
  - 11월 ~ 3월 : 09:00 ~ 19:30
- 위탁구간 : 북부사거리 ~ 중앙교 북단 39면

○ 연 매출액

(단위 : 천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 4월
매출액	31,912	46,609	46,027	14,398

○ 위치도



2 거창읍 거점 공영주차장

○ 위탁기간 : '22. 10. 23. ~ '23. 11. 22. (13개월)

○ 수탁기관 : 주식회사 푸른솔

○ 운영시간 : 09:00 ~ 18:00 / 연중무휴

○ 위탁위치 : 거창읍 대동리 780-3 인근

○ 연 매출액

(단위 : 천원)

구분	2022년	2023. 4월	비고
매출액	2,341	10,509	22.11.~운영

○ 위치도



## 향후계획

- 원가산정 : 2023. 8. ~ 9..
- 입찰공고 및 민간위탁 선정심의 : 2023. 10.
- 계약체결 : 2023. 10. ~ 11.
- 위탁운영 : 2023. 11. 23. ~ 2026. 11. 22. / 3년간

## 기대효과

- 장기주차방지, 중심상가 방문객 증가, 지역상원 활성화 유도
-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확보의 선순환 형성
- 도심주차환경 불편해소와 인근상가 이용 고객 증가

# 관 계 법 령(요약)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주차장법

### 제8조(노상주차장의 관리)

- ① 노상주차장은 제7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특별시장·광역시·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 ②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의 자격과 그 밖에 노상주차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와 그 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 3. 22.]

### 제13조(노외주차장의 관리)

- ① 노외주차장은 그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 ② 특별시장·광역시·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특별시장·광역시·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위탁을 받아 노외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노외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는 “노외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로 본다.

[전문개정 2010. 3. 22.]

##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공영주차장의 수탁자 자격) (2016.12.28)

- ①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이 설립한 공공 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이나 실적 있는 법인과 비영리법인(개정 1998. 2.11 조례 제1467호 2016.12.28)

3. 그 밖에 능력 있는 법인 또는 개인

- ② 삭제(2016.12.28.)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제 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및 후단신설 2013.6.12)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6.12.)